

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0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. 7. 1. 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: 2024. 7. 4.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4. 7. 17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정이유

「자연공원법」 제36조의3에 따라 고성군을 고성공룡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(안 제1조)
나. 지질공원 인증 추진 관련 지원(안 제4조)
1)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
2) 지질공원 관련 지식·정보의 보급
3)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
4)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
5)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다. 지질공원해설사 육성·활용(안 제5조)
라. 고성공룡지질공원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6조, 제7조)
-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
마. 주민협의체 설치 등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연공원법」 제36조의3
나. 예산조치: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예정
- 지질공원해설사 양성 과정 교육비 등 편성(31,600천 원)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·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4203(2024. 4. 3.)호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659호
가) 예고기간: 2024. 4. 11 . ~ 2024. 5. 1.(20일간)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 조문 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「자연공원법」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조례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~제2조)
 -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 - 군수의 책무 및 지원(안 제3조~제4조)
 -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예산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음.
 - 지질공원해설사(안 제5조)
 - 지질공원해설사의 육성·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음.
 - 지질공원자문위원회 구성(안 제6조~제7조)
 - 15명 이내의 지질공원자문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주민협의체(안 제8조)

-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존속기한(안 제9조)

- 조례의 존속기한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때까지로 규정하였음.

○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고성군을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(환경부고시 제2020-298호)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: 없음

9. 심사결과: 2024. 7. 17. 원안가결

10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